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7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 : 야전비 · 심상정 · 김경만

김민석 • 윤재갑 • 주철현

김용민 · 김경협 · 강은미

송갑석 · 신정훈 · 윤미향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회생절차의 개시·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는 대략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이장기화 되고, 나아가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 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 금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못하고 퇴직한"을 "못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퇴직한 근로자"로, "제4호"를 각각 "제4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근로자"를 각각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가 제4항"을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으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가 제4항"을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호를 중복하여 지급 하지 아니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 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및 소득수준이나 그 밖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한다)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각호의 금액은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 ① 재직 중 제8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체당금 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직 중 제8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 고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① 제8항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재직근로자의 기준, 채당금의 상한액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는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하거나"로,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를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 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7조의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근로자에게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결정·판결 등이 있거나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제1조(목적) ①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	
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u>못하고 퇴직한</u>	<u>못한</u>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	
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	
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	
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	
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	
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	
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u><단서</u>	
<u>신설></u>	이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
	하는 한 각 호를 중복하여 지급
	<u>하지 아니한다.</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
	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 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 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 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 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u>근로자</u>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u>제4호</u>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 항<u>제4호</u>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
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
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4호 및 제5호
· 1.·2. (현행과 같음)
,
③ <u>퇴직한 근로자</u>
<u>제4호 또는 제5호</u>
<u>-제4호 또는 제5호</u>

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u>근로자</u>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 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u>근로자가</u>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생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 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 하 "재직근로자"라 한다)가 제 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 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호의 금액은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따른 휴업수당
- ① 재직 중 제8항에 따른 체당 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이후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직 중 제8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① 제8항에 따른 체당금 지급 대상 재직근로자의 기준, 채당 금의 상한액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u>근로자</u> 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 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 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 잔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 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 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	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근로자
	는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
	하거나
	<u>임금등•</u>
	<u>사업주 확인서</u>
	②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
	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
	공단
	③ (현행과 같음)